

[별표 7]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 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 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